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은 유효하고, 공제 대상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라도 약정에 따른 공제효과는 유지되며,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 및 계약관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당 일정 금액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었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환수금이 피고가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함.

나. 회생절차 경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짐.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일부 수수료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608,900,000원 상당의 채권은 신고하지 않음.

회생절차 종결 후 피고는 위 환수금 채권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있다고 주장함.

2. 원심의 판단

쟁점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환수금 채권을 위탁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임.

원심은,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피고의 환수금 채권이 실권되어서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위 환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환송

가. 관련 법리

(1) 공제약정의 유효성

민법 제105조에 따른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며, 공제의 요건, 기준시점, 공제의 의사표시 필요 여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2) 회생절차와 공제약정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더라도 약정에 따른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함.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매월 위탁수수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공급계약 해지 또는 연체 시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함. 위 채권·채무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한 구조임.

피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계약에 따라 일정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음.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공제약정에 따른 정산 대상 채권·채무의 범위와 공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실권을 이유로 공제를 부정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4.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계약상 공제약정과 채무자회생법상 상계 제한 규정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대법원은 동일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사이에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더라도 공제약정의 효력이 유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생채권 신고 여부만으로 공제효과를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함.

이는 위탁판매계약, 판매대리계약, 금융상품 유통계약, 리베이트·수수료 정산계약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정산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인한 판결로 평가됨.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실무에서는, 장기계약 체결 시 수수료 환수·정산 조항의 구조와 기준시점을 명확히 설계하고, 채권·채무 사이의 견련성을 계약상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회생채권 신고, 상계권 행사 등 여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약상 공제 효과의 발생 시점과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제 주장을 함께 할 필요가 있음.

관련구성원

이원

변호사

02-316-4406

wlee@shinkim.com

문희춘

변호사

02-316-4051

hcmoon@shinkim.com

오새론

변호사

02-316-1658

sroh@shinkim.com

이동헌

변호사

02-316-4263

dhelee@shinkim.com